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11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곽규택 · 정성국 · 윤상현
윤용근 · 박형수 · 김민전
김대식 · 유용원 · 최수진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 퇴역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

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의2 신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 평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공포일 이후 제2조의2의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 연금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u>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후단 삭제></u> 제2조의2(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u>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 평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
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득인
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에서 공제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
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
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
제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
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
산의 범위, 제1항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 재산의 소득환산
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
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